공고 제 63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3일

석남2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호	김 *호 1985-08-14	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로 (석남동)	직권말소 2026-11-23